1. 개정이유

「지방공무원 임용령」 개정에 따라 위임된 사항을 정하고, 특수지 등 근무경력에 대한 가산점 인정기간 기준 마련 등 가산점 제도를 정비하며, 기타 제도상 미비점을 개선하려는 것임

2. 주요내용

가. 전문직위 활성화를 위한 인센티브 강화(안 제16조 및 제24조)

1) 전문직위에 대한 가산점을 현행 경력평점 가산점에서 특정직위 가산점으로 변경함에 따라 경력평정 가산점에서 삭제하고 특정직위 가산점 항목으로 신설함

2) 전문직위에 대하여 영 제27조의 제1항의 필수보직기간(2년)을 근무한 사람에 대하여 가산점 1점을, 필수보직기간(2년)을 초과 근무한 사람에게는 1개월마다 0.05점의 가산점을 부여함

나. 특수지 근무경력 등 가산점 부여 방식 개선(안 제24조)

1) 국가공무원이 지방공무원으로 재직시 특수지 근무경력에 대한 가산점을 부여하고 있지 않으나, 그 반대의 경우인 지방공무원이 국가공무원으로 재직시 특수지 근무경력에 대해 가산점을 부여하고 있음에 따라 관련 조문을 삭제함으로써, 형평성 논란을 해소하고자 함

2) 특수지 등 근무경력에 대한 가산점 부여시 가산점 인정기간에 대한 기준을 영제31조의6 제2항의 경정평정대상기간으로 명확히 함

다. 기타 제도개선 등(안 제24조제3항, 제3조제4항 및 제27조제6항)

1) 「지방공무원 임용령」제27조 필수보직기간 개정에 따라, 사회복지 업무, 재난 및 안전관리 업무에 대한 가산점 부여시기를 1년 6개월에서 2년으로 조정함

2) 수시평정의 경우 근무평정의 예외에 따른 조정사유로 한정하고, 승진명부 작성시 실적가산점에 대한 점수를 3점으로 정정함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생　　략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　　의 : OOOO부 등과 합의되었음

라. 기　　타 : 1) 신・구조문대비표, 별첨

2) 입법예고(2018. 2.6. ~3.18.) 결과, 특기할 사항 없음

3) 행정규제 :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, 이견 없음

- 규제 신설・폐지 등, 없음

행정안전부령 제 호

지방공무원 평정규칙 일부개정령안

지방공무원 평정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조제4항 중 “제31조제1항제5호”를 “제31조제1항제4호”로 한다.

제16조제3항 중 “영 제7조의3제1항에 따른 전문직위 등 가산점”을 “가산점”으로 한다.

제2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을 삭제하고, 같은 항 제1호 전단 중 “특지·갑지(국가공무원의 경력인 경우에는 가지·나지)”를 “특지·갑지”로 하며, 같은 항 제2호 전단 중 “을지(국가공무원의 경력인 경우에는 다지)”를 “을지”로 하고, 같은 항 제3호 전단 중 “병지(국가공무원의 경력인 경우에는 라지)”를 “병지”로 하며,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“1년 6개월을”을 각각 “2년을”로 하고, 같은 조 제6항을 삭제하며, 같은 조 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제5항 및 제6항으로 하고,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④ 영 제7조의3제1항에 따른 전문직위에서 2년을 근무한 경우에 1점의 가산점을, 2년을 초과하여 근무한 경력에 대하여 1개월마다 0.05점의 가산점을 추가로 부여하여야 한다.

제24조제6항(종전의 제5항) 중 “제1항 및 제3항”을 “제1항부터 제4항”으로 하고, 같은 조에 제7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⑦ 제1항부터 제4항의 근무경력에 따라 가산점 평정기간은 영 제31조의6제2항의 경력평정대상기간으로 한다.

제27조제6항 단서 중 “5점”을 “3점”으로 한다.

부 칙

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 다만, 이 규칙 시행 전에 임용된 사람에 대해서는 제16조 및 제24조의 개정 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3조(평정 시기) ① ~ ③ (생략) ④ 제2항에 따른 수시평정은 정기평정 후 제31조제1항에 따른 승진후보자 명부의 조정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근무성적(제31조제1항제5호에 따른 조정사유가 발생한 경우로 한정한다)에 대해서는 승진후보자 명부의 조정일을 기준으로 하여 실시하고, 경력에 대해서는 정기평정 기준일을 기준으로 하여 실시한다.	제3조(평정 시기) ① ~ ③ (현행과 같음) ④ ----------제31조제1항제4호----------.
제16조(경력의 평정점) ①·② (생 략)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경력평정을 할 때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운용 여건을 고려하여 영 제7조의3제1항에 따른 전문직위 등 가산점을 부여할 특별한 사유가 있는 직위를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. ④ (생 략)	제16조(경력의 평정점) ①·② (현행과 같음) ③ ---------- 가산점----------. ④ (현행과 같음)
제24조(특수지 근무경력의 가산점 등) ① 5급 이하 공무원·연구	제24조(특수지 근무경력의 가산점 등) ① ----------

사 및 지도사가 해당 계급에서 「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」 제12조에 따른 특수지의 해당 기관에서 근무한 경력(연구사·지도사의 경우에는 6급 및 7급 공무원으로 특수지의 해당 기관에서 근무한 경력을 포함한다)이 있는 경우에는 영 제32조제2항 및 연구·지도직규정 제14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점수 이내에서 가산점으로 평정한다. 이 경우 국가공무원 재직 시에 「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」 제12조에 따른 특수지의 해당 기관에서 근무한 경력은 지방공무원의 해당 계급에서 근무한 경력으로 보아 이를 평정한다.	---------- ---------- ---------- ---------- ---------- ---------- ---------- ---------- ---------- ---------- ----------. <후단 삭제>
1. 특수지 특지·갑지(국가공무원의 경력인 경우에는 가지·나지)에서 근무한 경력: 1개월마다 0.025점	1. ---- 특지·갑지---------- ---------- ---------- ---------
2. 특수지 을지(국가공무원의 경력인 경우에는 다지)에서 근무한 경력: 1개월마다 0.018점	2. ----- 을지---------- ---------- ---------- -

3. 특수지 병지(국가공무원의 경력인 경우에는 라지)에서 근무한 경력: 1개월마다 0.013점	3. ----- 병지---------- ---------- ---------- -
② (생 략)	② (현행과 같음)
③ 임용권자는 영 제32조제2항에 따라 5급 이하 공무원·연구사 및 지도사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상시적으로 담당하는 직위에서 계급의 변동 없이 1년 6개월을 초과하여 근무한 경우에는 1년 6개월을 초과하여 근무한 경력에 대하여 1개월마다 0.05점의 가산점을 줄 수 있다.	③ ---------- ---------- ---------- ---------- ---------- 2년을 - ---------- - 2년을 ---------- ---------- ----------.
1.·2. (생 략)	1.·2. (현행과 같음)
<신 설>	④ 영 제7조의3제1항에 따른 전문직위에서 2년을 근무한 경우에 1점의 가산점을, 2년을 초과하여 근무한 경력에 대하여 1개월마다 0.05점의 가산점을 추가로 부여하여야 한다.
④ (생 략)	⑤ (현행 제4항과 같음)
⑤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가산점은 정기평정기준일 현재까지의 근무경력에 대하여 개월 수 단위로 계산하여 평정하되, 15	⑥ 제1항부터 제4항--------- ---------- ---------- ----------

일 이상은 1개월로 계산하고 15일 미만은 산입하지 아니한다.	----------.
⑥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근무경력기간 중 휴직·직위해제 및 정직 기간이 있을 때에는 그 기간은 평정 대상기간에서 제외한다.	<삭 제>
<신 설>	⑦ 제1항부터 제4항의 근무경력에 따라 가산점 평정기간은 영 제31조의6제2항의 경력평정대상기간으로 한다.
제27조(승진후보자 명부의 작성방법) ① ~ ⑤ (생 략)	제27조(승진후보자 명부의 작성방법) ① ~ ⑤ (현행과 같음)
⑥ 제25조의2 및 제1항 단서에 따라 합산하는 실적 가산점은 제3항의 방법에 따라 산정한 점수로 하되, 5점을 넘지 못한다. 이 경우 제3항 중 "근무성적평정점" 및 "평정점"은 각각 "실적 가산점"으로 본다.	⑥ ----------3점----------. ----------.
⑦ ~ ⑧ (생 략)	⑦ ~ ⑧ (현행과 같음)